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상목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
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
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)라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) 아파트(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지 않을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)라)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현행	개정안
제4조의3(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) ① (생략) ② 삭제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 1. 2. (생략) 3.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 가. ~ 마. (생략) 바.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)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가) ~ 다) (생략) 라)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	제4조의3(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) ①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.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바. ----- ----- ----- ----- 1) ----- ----- 가) ~ 다) (현행과 같음) 라) 아파트(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지

	<u>않을 것</u>
마) (생 략)	마) (현행과 같음)
2) (생 략)	2) (현행과 같음)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13